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22

발의연월일 : 2024. 8. 14.

발 의 자:윤건영·박지원·남인순

이성윤 • 이기헌 • 전현희

이해민 · 용혜인 · 백승아

역태영 · 김병기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는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정보의 구체적인 항목과 제출 서식 등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6월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는 직종별·직급별로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작성하던 서식의 내용이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작성하도록 변경되었음. 이는 고용노동부가 현행법의 직종별·직급별 자료 제출 대상은 남녀 근로자 현황에만 해당하므로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직종별·직급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임. 그러나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체 남녀 근로자의임금현황이 아니라 직종·직급에 따른 임금 정보의 파악이 중요하므로 이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직종별·직급별 남 더 근로자 현황 및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고용노 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매 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남녀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보다 기여하고 자 함(안 제17조의3 및 제39조).

법률 제 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2항 중 "현황과"를 "현황과 직종별·직급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현황,"을 "현황, 직종별·직급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으로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직종별·직급별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제39조제4항제3호 중 "남녀 근로자 현황"을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또는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등) ①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
해당하는 사업주는 직종별・직	
급별 남녀 근로자 <u>현황과</u> 남녀	<u>현황과 직종</u>
근로자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	별·직급별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려는	
사업주는 직종별 · 직급별 남녀	
근로자 <u>현황</u> , 남녀 근로자 임금	<u>현황, 직종별·직급별</u>
현황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직종별 • 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직종별・
	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 계획과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의 기재 사항, 제출 시기, 제출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 부렁으로 정한다.

제39조(과태료) ① ~ ③ (생 조략)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 (생략)
-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 8. (생략)

⑤ (생략)

<u>⑥</u>
<u>직종별·직급별 남녀</u>
근로자 현황,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
- .
제39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4
1. • 2. (현행과 같음)
3
직종별 · 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또는 직종별・직급별 남
<u>녀 근로자 임금 현황</u>
4. ~ 8.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따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